

조문 별 개정사유서

1. 상수원보호구역 원거주민의 범위 확대

(안 제2조제4호마목 신설)

가. 개정 이유

- 보호구역 지정 당시 거주민(원거주민)의 소득 증대를 위해 행위제한을 완화*한 제도 취지를 고려, 그 자녀 세대의 생계유지 지원 필요

* (동 규칙 제15조) 환경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의 음식점 용도변경 등 허용

나. 개정 내용

- ‘원거주민의 자녀로서 보호구역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한 자’까지도 원거주민의 범위에 추가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원거주민의 요건 완화를 통한 원거주민의 자녀 세대의 법 테두리 내 재산권 행사 및 경제활동 보장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 사항 없음

2. 수도권로 터널공사 폐수처리시설 설치 허용

(안 제12조제1호나목2) 개정)

가. 개정 이유

- 수도권로 터널공사시 배출되는 폐수의 성상이 타 터널공사와 유사하나, 도로·철도·전기설비 터널공사 폐수처리시설의 입지만 허용

나. 개정 내용

-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도권로의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 시 임시로 설치되는 폐수처리시설의 입지를 허용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 허용된 시설과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시설의 보호구역 내 입지를 허용하여 규제 적용의 형평성 확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 사항 없음

3. 수도관로의 보호구역내 입지 허용 명문화

(안 제12조제1호라목6) 신설)

가. 개정 이유

- 보호구역내 설치 가능한 것으로 법령해석상 인정했던 수도관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선 지자체의 혼선을 방지

나. 개정 내용

- 「수도법」에 따른 수도 중 관로(管路)의 설치가 허용됨을 명시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수도관로의 보호구역 내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해석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, 국민의 예측 가능성 및 행정 집행의 일관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 사항 없음

4. 양봉시설의 입지 허용 명문화

(안 제12조제3호카목 신설)

가. 개정 이유

- 보호구역내 설치 가능한 것으로 법령해석상 인정했던 양봉시설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선 지자체의 혼선을 방지

나. 개정 내용

- 1가구당 300㎡ 이하의 양봉시설(벌통 및 양봉의 산물·부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시설)의 설치가 허용됨을 명시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양봉시설의 보호구역 내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해석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, 국민의 예측 가능성 및 행정 집행의 일관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 사항 없음

5. 농지 내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

(안 제12조제3호타목 신설)

가. 개정 이유

- 보호구역내 영농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위생상의 편의시설로서 화장실 설치가 제한*되어, 농업 종사자의 불편 지속 제기

* (현행) 기존 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국가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만 설치 가능

나. 개정 내용

- 보호구역내 농업 종사자에 한하여 농지에 바닥 면적 5㎡ 이하로 설치하여 공중화장실법상 간이화장실에 준하여 관리하는 경우 설치 허용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보호구역 내 농업 종사자의 기본적인 위생에 관한 권리 보장 및 환경 개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 사항 없음

6. 종교집회장 정의 구체화

(안 제12조제4호바목 및 사목 개정)

가. 개정 이유

- 상수원관리규칙상의 종교집회장에 해당하는 시설과 건축법상의 해당 시설*과 상이함에 따른 일선 지자체의 혼선 방지

* 교회, 성당, 사찰, 기도원, 수도원, 수녀원, 제실, 사당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

나. 개정 내용

- 바목의 종교집회장에 교회, 성당, 사찰, 수도원, 수녀원이 해당함을 명시하고, 사목의 ‘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’ 문언을 구체화

※ (현행) 바. ‘종교집회장(기도원은 제외한다)’

사. ‘효열비, 사당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’

(개정) 바. ‘종교집회장(교회, 성당, 사찰, 수도원, 수녀원)’

사. ‘효열비, 사당, 제실, 그 밖에 이와 유사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시설’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종교시설 건축 관련 행위허가 기준의 해석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, 국민의 예측 가능성 및 행정 집행의 일관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 사항 없음

7. 수질검사기록부 서식 현행화

(안 별지 제9호서식 개정)

가. 개정 이유

- 원수의 수질검사 항목(별표6)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질검사 기록부 측정항목을 현행화

나. 개정 내용

- 수질검사기록부 측정항목에 총유기탄소, 총인, 클로로필-a, 1,4-다이옥세인, 폼알데하이드, 헥사클로로벤젠, 철, 망간을 추가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개정된 수질검사 항목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 사항 없음